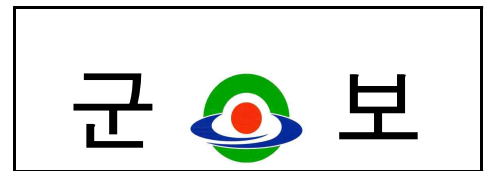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8호 2022. 7. 25.(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00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며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정기점검(안 제4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

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안 제6조)

- 점검비용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3층 이하로서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을 받도록 함.

다. 건축물 해체 신고(안 제8조)

- 합리적인 건축물 해체 신고 범위를 규정하여 안전하게 건축물 해체를 함으로써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chaslee442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축과

3) 팩스 : 054-650-63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전화 : 054-650-63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건축물관리 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며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정기점검(안 제4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안 제6조)

- 점검비용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3층 이하로서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을 받도록 함.

다. 건축물 해체 신고(안 제8조)

- 합리적인 건축물 해체 신고 범위를 규정하여 안전하게 건축물 해체를 함으로써 귀중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

3. 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제1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제11조, 제21조, 제23조 및 제31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7월 중 실시 예정

바.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해체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
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
천할 것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
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것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높이의 1.5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어린이집과 이와 유사한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8m 이
상의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